



2018년 합격!
02)3280-9990

2018년 국가직 9급기출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공무원

http://www.nambugosi.com

01 총평

2018년 9급의 세법은 2016, 2017년과 비교하여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세법은 85점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나 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공부량이 적은 수험생이라면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합병 그리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평상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힘들었을 것이다.

02. 국가직 9급 출제경향

국세기본법(4)	1. 가산세 2. 기한후신고 3. 경정청구 4. 세무조사
국세징수법(2)	1. 징수유예 2. 가산금
부가가치세법(4)	1. 납세의무자 2. 재화의 공급 3. 영세율 4. 매입세액공제
법인세법(5)	1. 사업연도 2. 자산의 취득가액 3. 부당행위계산부인 4. 합병 5. 외국납부세액
소득세법(4)	1. 기타소득 2. 공동사업 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4.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1)	명의신탁 증여의제

03 국세기본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9급 다형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답> ②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것이지, 미납세액의 20%가 아니다.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Min[㉠, ㉡]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 미납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 한도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답> ① 재화의 담보제공은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인도 또는 양도가 아니므로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다만, 담보제공된 재화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답> 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년 합격!
02)3280-9990

2018년 국가직 9급기출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공무원

<http://www.nambugosi.com>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①	5년	60일	5년
②	3년	60일	3년
③	5년	90일	5년
④	3년	90일	3년

<답>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한다.

<답>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답> ④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7. 「국세기본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 할 수 있다.

<답>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8조). 따라서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2018년 합격!
02)3280-9990

2018년 국가직 9급기출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공무원

<http://www.nambugosi.com>

- ②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③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④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답>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지분비율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우선배분한다.

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080원
- ② 1,320원
- ③ 2,160원
- ④ 2,400원

<답>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일급여} - 100,000\text{원}) \times 6\% \times (1 - 55\%)$$

$$(140,000 - 100,000) \times 6\% \times (1 - 55\%) = 1,080\text{원}$$

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 ④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답> 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징법제 21조제4항).
-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국징법제 21조제2항).
- ④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국징법제 21조제3항). 따라서 가산금 최대 부과액은 체납세액의 75%(3% + 72%)를 초과할 수 없다.

1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④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답> ②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④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답>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14.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답>② 법인 아닌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이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충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④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답> ③ 부당한 거래인지의 여부의 판단시점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

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불공정합병)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2항). 따라서 전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가 아니다.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내국법인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답>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제8조제2항). 따라서 합병등기일까지이지 합병등기일 전일까지가 아니다.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세법」 제44조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답>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양도가액(합병대가)이 순자산시가에



2018년 합격!
02)3280-9990

2018년 국가직 9급기출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공무원

<http://www.nambugosi.com>

미달하는 경우 그 합병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익금에 산입할 합병매수차익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 월수/60월]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③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①

- ②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액분을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③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 ④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19. 「법인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③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

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 ④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답> ③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상증법 제45조의2 제6항).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①②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 ④ 상증법 제45조의2 제4항.

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답> ③

옳은 것	ㄱ, ㄷ, ㄹ
틀린 것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로 계산하지 않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